

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5. 21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5. 21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5. 23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강우)

가. 제안이유

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공유재산 취득(기부채납, 증축)

다.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 조	면 적	추 정 가 액	건 축 주 (기 부 자)
장 립 2 동 사 증 축	장림동 601번지	철근콘크리트- 스 라 브	129	53,000	김 진 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기부자 김진호는 장림2동사 2층 옥상에 129㎡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코저 하는 것으로 의회가 동의하여 구 재산을 증가하는 반면 주민의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